

 보건복지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4월 1일(금) 조간 (3.31 12:00 이후 보도)			
 h-well 국민건강보험	2022. 3. 31. / (총 4매)			
배 포 일	2022. 3. 31. / (총 4매)			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	과 장	백 형 기	전 화	044-202-3340
	담 당 자	오 동 업		044-202-3498
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조사부	부 장	정 근 순	전 화	033-736-3904

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제공에 관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

- 복지부-지자체-건보공단 합동, 복지용구 급여 적정 제공여부 조사 -
-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로 현장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·신체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(이하 “복지용구 사업소”)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*의 적정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.

* 수급자는 연 한도액(160만 원)의 범위에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동 변기, 목욕의자 등을 구입하거나 수동휠체어, 전동침대 등을 대여할 수 있음

-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강도태)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복지용구사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,
 - 장기요양기관인 복지용구사업소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·분석 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1조)이다.

- 특히,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서는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, 급여 제공자 및 이용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.
- 이에 따라,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 여부,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면제·감경 여부* 및 복지용구 관리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되,
 - *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5조(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) 5항 및 제40조(본인부담금)
-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·제공에 관한 만족도 및 운영 실태조사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.
- 보건복지부는 2021년 대표자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.
 - 그 결과,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40개소 중 30개소에 대해 약 44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.
-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현지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사전 예고하고,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와 노인장기요양보험(www.longtermcare.or.kr) 누리집에도 게재된다.
 - 또한, 장기요양기관 부정청구 신고는 인터넷(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), 우편(건보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)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,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 전화(033-811-2008)*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【 신고인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별 전용전화 】

☎ 서울·강원 02-2126-8620	☎ 경기·인천 031-230-7914
☎ 부산·울산·경남 051-801-0470	☎ 대구·경북 053-650-9940
☎ 광주·전라·제주 062-250-0374	☎ 대전·세종·충청 044-251-7730

- 아울러, 최근 **코로나19 확산 상황**을 고려하여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,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.
- 백형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“이번 기획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로 현지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여 부정청구를 예방하되,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.”라고 밝혔다.
- 또한, “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중 상대적으로 청구비중이 낮은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의 성격도 있으므로, 그 결과를 통해 향후 관련 급여에 관한 제도 개선에 적극 검토·활용할 예정이다”라고 전했다.

< 붙임 > 2022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개요

붙임

2022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개요

- (배경) 복지용구사업소의 허위청구 및 본인부담금 면제·감경 등 부적절한 급여제공이 복지용구 급여의 질을 저해하는 사례* 발생

* 최근 5년간 현지조사 실시 기관 중 복지용구사업소는 93개소이며, 이 중 부담 이득금 환수 26개소, 3,100만 원 수준

《 주요 부정사례 》

[A 복지용구사업소] 수급자 18명에게 복지용구 제품코드나 제조번호가 불일치한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

[B 복지용구사업소] 복지용구 제품을 구입한 수급자에게 구입을 희망하지 않은 미끄럼방지 용품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선물처럼 끼워서 제공하고 수급자가 희망하여 구입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

[C 복지용구사업소]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, 최대 15일까지 대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나 수급자 19명에게 15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청구

※ 그 외,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미제공,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기록·보관하지 않거나 기관 소재지 변경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有

- (조사 방향) 부정급여 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복지용구 사업소의 청구 내역 및 급여제공 과정 실태를 중점 점검·조사
- (조사 실시 기간) '22. 4. ~ 6월(3개월간)
- (대상기관수) 복지용구 사업소 40개소
- (기대효과) 복지용구 급여비용 적정청구 및 급여제공 과정 실태 점검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